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2023. 12.



국토교통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1. 계획의 개요

- 계획 명 :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
- 면 적 : 7,310,502㎡
- 계획인구 : 103,500인(46,000세대)
- 사업기간 : 2024년~2033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그림 - 1> 계획지구 위치도

2. 주민 등 의견 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 공고일자 : 2023년 10월 19일(목)
- 공고번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41호
- 전자공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신문공고 : 중앙일보(일간신문), 경기일보(지역신문)

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3년 10월 19일(목) ~ 2023년 11월 17일(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김포시 스마트 도시과, 마산동·운양동·장기동·장기본동·양촌읍 행정복지센터

다.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 2023년 11월 03일(금) 10시 30분
- 장소 : 김포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김포시 사우중로26)

라. 공람 내용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전문

마.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일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23년 11월 24일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41호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1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
- 규모 : 7,310,502㎡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3년 10월 19일(목)~2023년 11월 17일(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 김포시 스마트도시과, 마산동-운양동-장기동-장기본동-양촌읍 행정복지센터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요약문,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및 요약문(공람장소에 비치)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23년 11월 3일(금) 10시 30분
- 개최장소 : 김포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 (김포시 사우중로 26)

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기간 시작일 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23년 11월 24일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50)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영향평가단(055-922-58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 2>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김포시 스마트 도시과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운양동 행정복지센터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양촌읍 행정복지센터

<그림 - 6>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비치



<그림 - 7> 초안 공람 및 설명회 알림 현수막 설치

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함

<표 - 1> 주민제출의견 및 공청회 개최필요 의견

구 분		제출의견(건)	공청회 개최의견(건)	비 고
정보통신망	국토교통부	-	-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11	1	-
공람장소		2	1	-
합 계		13	2	-

가.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 일시장소 : '23. 11. 3.(금) 10:30 김포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김포시 사우중로 26)
- 개최결과
 - 참석인원 : 118인(참석자 명부 기준)



<그림 - 8> 설명회 개최사진

<표 - 2> [설명회] 주요 주민의견 및 반영여부

구 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주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구성이 6월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식물, 양서파충류 등에 대하여 단기간에 조사로 현황 파악이 가능한지? •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관리시행 지역에 대규모사업 가능여부? • 항공기소음 기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준에 맞는지? • 환경기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건지? • GTX노선하고 5호선 노선이 신도시 가운데를 통과하는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 문제 해결방안은? • 총 사업비 중 용지비 비용이 얼마인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30%는 목적에 맞지 않으며 이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방안은? • LH, 국토부, 김포시, 주민단체 간의 민간 협의체 구성시기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7월에 개최하고 동식물상의 분류군별 특성 및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초안 전, 초안 후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기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생태적인 특성을 파악할 계획임 • 김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소음 현황 조사시 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 기준 61Lden(dB(A))를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방안 부문에 대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별도로 검토 진행 중이며,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 단계에서 교통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제시하겠음 • 총 사업비는 1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용지비는 지구지정 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 따라서 용지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알 수 없음 • 보상단계에서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관련 안내를 충실히 이행하겠음 • 주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할 예정임
주민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등급 생태등급이 나온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보전등급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조사하였으며 계획지구는 대부분 5등급지역으로 일부 3등급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주민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가 얼마이며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비율이 아닌 용지비 비율은? • 항공기 소음이 상당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갈수기시 석모천, 가마지천으로 하수 유입으로 오염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는 1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용지비는 지구지정 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 따라서 용지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알 수 없음 • 항공기소음 조사결과 소음영향도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지구지정후 하천 오염원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구 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주민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가 반드시 결정이 돼야 지구지정이 되는건가요? • 환경부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주민설명회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이에 대한 답변이나 새로운 절차 같은게 있나요? • 타임스케줄과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와 협의완료 후 지구지정이 가능함 • 2023년 4월에는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지구지정은 24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수립된 주민의견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 등의 반영여부를 공개할 계획임 • 2023년 4월에는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지구지정은 24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음
주민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양~강화간 고속도로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시기? • 지구지정 전에 대략적인 토지이용에 민간과의 협의시기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양~강화간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지구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수용시기는 현재 단계에서는 알 수 없음 •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수립시 확정되는 사항으로 관련 시기에 협의를 통해 검토 하겠음
주민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모리 신규 주택부지 배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척 불가한 사항임
주민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전대책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지정 이후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할 예정임
주민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5호선 계획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5호선 노선 결정은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사안임
주민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5호선 공사는 신도시 완공 후 시작되는건지? • 지하철 5호선 선형계획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은 5년 정도 예상하며 본 계획 및 한강신도시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지하철 5호선 노선 결정은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사안임
주민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시 지정이 되고 지하철 5호선 계획이 무산된다면 그 점에 대한 해결책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검토를 별도로 진행 중이며, 지구지정 이후 지구 계획 단계에서 교통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제시하겠음
주민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시에 지정에 관한 일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4월에는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지구지정은 24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음

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정보통신망) 주민의견

- 주민의견 수렴(11건 의견 개진)
 - 공청회 개최 요청 1건

<표 - 3>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주요 주민의견 및 반영여부

구 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 (경기도 김포시 석모리 931-126)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입니다. • 단독주택 마을에 주거용을 목적으로 토지 (현재지목: 과수원)를 구입 하였으나, 신도시 개발 예정으로 인하여 건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건축을 위해 보강토 공사, 건축 설계 등 기초 작업을 모두 완료한 상태이고 비용을 지불한 상황입니다. • 이에 추후 토지 보상 시 인근 대지가격의 토지 보상 및 비용이 발생된 공사 및 설계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단계에서 관련법 등에 따라 보상 여부를 적절히 판단토록 하겠음
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서울 및 경부선고속도로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하여 지방 진출입시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도시 사업진행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이 우려됨.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이주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2년 미만의 거주자에 대한 형평성을 위반한 이 주민 대책 제도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2년 전부터 살고 있는 주민이나 2년 미만의 주민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거주기간이 2년 미만으로 인해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2년 미만의 거주자는 재산권이나 건축 시 제한으로 말미암아 더 손해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3. 주민 참여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에 주민의 의견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수렴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별도로 검토 진행 중이며, 지구지정 이후 지구 계획 단계에서 교통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제시하겠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민의 주거 안정 및 재정착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겠음 • 주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할 예정임

구 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p>4. 주민의 동의가 없는 지구지정은 반대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보상 시 기존주민들의 희생이 뒤따르는 사업진행은 강력히 반대하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p>5. 이주자 택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의 여건을 유지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주자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 지역여건,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계획하겠음
<p>임○○ 김○○ 이○○ 양○○ 임○○ 김○○ 이○○ 최○○ 공○○</p>	<p>1. 교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사업지구 인근 주민들이 서울 진출입으로 아주 많은 교통불편을 겪고 있어 사업 시행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심각한 교통혼잡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영향예측과 교통개선 대책 마련 여부를 제대로 세워서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GTX-D 라인과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김포는 극단의 교통지옥이 됩니다. <p>2. 이주대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을 위한 이주민 재정착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이주민이 신도시 기반공사를 하는 몇 년 동안 신도시 인근에 정착을 원할 경우 우선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주자주택 대상 요건을 공람공고일 1년 전으로 강화함으로써 이주민 보상이 축소되었습니다. 투기 행위 차단과 상대적으로 짧은 이주자에 대한 이주 대책 시행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이유였으나, 이주민 입장에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모산마을은 신축전원주택단지입니다. 마을 이주민 전체에 생활대책용지를 요구합니다. <p>3.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2 공공주택공급 예정지구는 김포국제공항 항공기의 항로와 중첩해서 위치하여 항공기소음 예측 조사 한 후에 전문가 의견 및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검토를 별도로 진행 중이며, 지구지정 이후 지구 계획 단계에서 교통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제시하겠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지하철 5호선 등 노선 결정은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사안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원주민의 주거 안정 및 재정착을 위해 이주 및 생활 대책을 수립하겠음 항공기 소음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조사지점에서 소음영향도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구 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p>4.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계획 수립 및 진행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사전협의체) 구성하여 공동 참여 요청합니다. <p>5. 개발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소유자 협의 없는 지구지정 반대합니다. 보상 시 기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을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p>6. 이주자택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 1층에 한해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용도 허용 가능한 부분을 지상 2층과 60%로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주자택지 내 주차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주자택지내 주차용량을 충분 감당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반영을 요청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이주자택지 배치를 반드시 지구 내 강제 이주되는 주민과 협의하여 이주자택지 배치 계획 수립 요구합니다(관민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토지보상법」개정으로 이주자택지 매매가 제한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워졌습니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이주자택지의 매매 허용 요구합니다. 이주자택지 제공면적은 평균 100 ~ 120평 확보를 요청합니다. 이주자택지 건축물은 5층까지 허용을 요구합니다(1~2층 상가와 사무실, 3~5층 주택 조성) 이주자택지 주변으로 충분한 조경 및 공원시설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할 예정임 토지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주자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 지역여건,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계획하겠으며,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주민협의체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음 지구계획 수립 시, 주차장 관련 규정 및 대상지 여건 등에 따라 적정 수준의 주차 대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구 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p>7. 보상</p> <p>1) 김포가 서울로 편입 여부가 거론되고 있어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합니다. 현 상황과 주변환경, 물가 상승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거래가 이상 보상하는 현실적인 보상가 산정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p> <p>2) 김포지역은 서울 편입 여부 결정전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현재토지보상 기준을 적용한다면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기준을 폐지하고 현실적 대안(기준) 마련을 요청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원주민과 공유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합니다.</p> <p>8. 세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이주에 대한 자의적인 뜻이 없는 이주민들에게 강제 수용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득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양도세를 적용한다면 일반 감면조항 적용은 부당합니다. 적용한다면 일반 감면조항에 추가 감면이 필요합니다. 강력히 요청합니다. <p>9. 주민대책위</p> <p>1) 각 주민대책위의 민관협의체 참여를 요구합니다.</p> <p>2) 지장물조사 시 주민대책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요구합니다.</p> <p>3)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주민 임시 주거지역 형성 방안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p> <p>4) 이주대책단지 조성 등에 있어 대책위원회,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를 요구합니다.</p> <p>10. 단독주택마을에 주거용을 목적으로 건축중 개발행위제한으로 인해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주민들도 이주 대책에 포함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 시행예정으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정당한 보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단계에서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관련 안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주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본조사 실시, 이주대책 등은 보상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 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p>11. 단독주택마을에 주거용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개발예정으로 인하여 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안하여 토지보상 시 인근 대지가격의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p> <p>12. 이주자주택 대상 요건을 공람공고일 1년 전으로 강화한 것은 불합리합니다. 토지 투기 행위 자체를 차단하여야 할 일을 이주민의 보상까지 축소시켰으므로 그에 상응한 보상을 요구 합니다.</p> <p>13. 원만한 협의와 이사기간을 확정 한 자에 한해서는 현 거주지에서 최대한 머물 수 있는 기간 보장을 요구합니다.</p> <p>14. 신축전원주택단지인 늘품마을의 존치 또는 제척을 요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겠음 • 보상 시행 후 원만히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음 • 지구경계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도로,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 객관적인 근거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였음

다. 공람장소 내 제출된 의견

- 주민의견 수렴(2건 의견 개진)
- 공청회 개최 요청 1건

<표 - 4> [공람장소] 주요 주민의견 및 반영여부

구 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마지천, 석모천, 봉성포천에 대한 식생, 동식물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보전 방안 등을 보다 상세하게 조사 및 계획에 적극 반영요망 • 주변 광역교통망 계획이 충분히 토지 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요망 (강화~계양 고속도로, 철도망계획, 외부연결 가로망, 대중교통 등) • 자족도시가 되도록 계획에 반영(베드 타운이 아닌 자족도시) •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친환경도시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마지천, 석모천, 봉성포천 등 계획지구내 수계에 대하여 분류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생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전방안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음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검토를 별도로 진행 중이며,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 단계에서 교통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제시하겠음 •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 용도별 규모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겠음
주민대책 위원회	<p>1.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 대책과 관련하여</p> <p>(1) 자연환경 중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과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중요성을 인지하여 김포 한강2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도면밀히 연구 조사하여야 하는데, 식물상의 경우 조사시기는 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10월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조류의 경우 이동성이 큰 종이므로 계절적 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양서·파충류의 경우 조사시기는 봄 2~5월, 여름 6~8월, 가을 9~10월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생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전방안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음

구 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p>(2) 자연환경 중 수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의 경우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생활용수 및 오수의 공급 처리량, 여유용량 등을 조사하고 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용 여부와 수질오염 총량 관리시행지역의 할당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하수연계처리 방안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p>(3) 생활환경 중 대기질과 관련하여, 사계절에 따라 대기질 차이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 대표성이 큰 값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소 위치 또한 계획지구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계절별로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는바, 비산먼지 저감대책, 교통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합니다.</p> <p>(4) 생활환경 중 소음·진동과 관련하여,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신도시 등이 존재하여 교통문제가 이미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및 새로 조성되는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진동 문제를 반영하여야 합니다.</p> <p>(5) 사회경제적 환경(일조장해)과 관련하여, 일조장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문헌조사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또한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바, 일조영향 최소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p> <p>(6) 기타환경(교통환경)과 관련하여, 이 건 계획지구가 속한 김포시에는 이 건 계획지구 이외에 바로 옆에 김포 한강신도시, 김포 장기지구, 김포 양곡지구 등 최근 김포시에 여러 개의 신도시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최근 김포시에 조성된 신도시에서 서울로의 출퇴근길이 이미 교통대란으로 악명이 높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교통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하수처리계획은 김포시와 협의하여 연계처리 또는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 계절별 특성으로 고려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장래 교통량을 예측하여 소음·진동 영향 검토를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 일조영향 검토를 실시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교통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구 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p>(7)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제12조(저감 방안의 수립)에 따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환경영향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수립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구체적인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p>2. 완전하고 정당한 토지보상을 위해 총사업비 및 용지비에 대한 재심을 요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예정)자가 현재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추정사업비를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대책위는 추정사업비, 용지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금액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중 용지비는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제세공과금,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대여비용 등 제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성원가가 공개된 사업지구를 용지비가 통상 총사업비의 50%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의 용지비도 총 사업비의 5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보상금은 현재 토지 거래시세의 1/3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당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추정 사업비 및 용지비를 재심의하여 50%이상 대폭 상향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지구지정 단계로 사업비는 확정 금액이 아닌 단순 추정금액으로 지구지정 이후 결정되는 사항임 용지비는 추후 기본조사 실시, 보상계획 공고(보상목록 확인) 후 감정평가 실시하여 보상금액 확정 후 보상착수(손실보상협) 예정임 토지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p>3. 토지보상을 우선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와 지장물을 분리하여 토지평가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토지보상 평가 시 토지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평가시스템을 만든 후 주민들과 합의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사업비 및 용지비를 협의보상평가 시점에 증액하여 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조사 실시 후 토지와 지장물 동시 보상 예정임 토지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구 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위 2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이후 지장물 조사에 동의할 것입니다. 	
	<p>4. 사업시행자는 공장이주대책 수립의무가 있는바, 실질적인 기업이전대책을 요구합니다(선이주 후 철거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에 제조업, 공장 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지구 내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에 제조업,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소유자들을 대변하여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영업을 지속해 온 제조업, 공장, 도매 및 소매업, 물류 및 유통, 창고 및 근생건물 소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이전대책을 요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보상 준비단계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에 따라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겠음
	<p>5. 주택이 철거되는 원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요구합니다(선이주 후 철거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예정)자에게 원칙적으로 이주대책을 마련 후 철거공사 등을 시행하고, 선이주 단지 조성을 위해 부득이 우선 철거되는 주민에 대해서는 인접지역 공공임대주택(국민 행복, 매입 등) 건설량의 30% 범위 안에서 사업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이주자택지 공급면적의 경우 265㎡ 이상 330㎡ 이하에서 원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공급하고, 이주자택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2층까지 허용하여 줄 것과 용적률을 200%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또한 이주자택지 점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주차장을 지상 또는 공원부지 지하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보상 준비단계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민의 주거 안정 및 재정착을 위해 이주 및 생활 대책을 수립하겠음 • 이주자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 지역여건,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계획하겠음 •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주차장 관련 규정 및 대상지 여건 등에 따라 적정 수준의 주차대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구 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p>6. 사업시행자는 '주민생계지원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바, 원주민들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한 주민생계조합 승인 및 철거공사 등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생계지원대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생계조합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김포시에게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사업시행자에게 1차적으로 공사진행 단계에서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및 건설폐기물처리 포함), 무연분묘 이장, 산림수목의 벌치(잔가지 및 뿌리 파쇄) 및 가이식(조경),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의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조사 이후 주민단체의 지위가 인정된 단체에 대하여 생계지원대책을 수립할 예정임 • 주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할 예정임
	<p>7.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을 요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 등에 따르면 원주민들이 토지강제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험값 보상금의 최고 40%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수용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 등이 김상훈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양도세 감면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감면안을 대폭 확대하는 법률개정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현금보상 50%, 채권보상 50%, 3년만기 채권 65%, 5년만기 채권 75% 감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단계에서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관련 안내를 충실히 이행하겠음

구 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p>8.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민관공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 회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상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의 '보상협의회'가 보상계획 공고 시점에 구성되므로 개발사업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개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과 반대 등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인정 고시 전에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인 김포시, 주민대표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민관공협의체)를 구성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할 예정임
	<p>9.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 확충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김포골드라인이 2019년 개통되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다소 용이해졌으나 경전철(2량) 수송력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5호선을 연장하고 GTX(장기역), 김포골드라인과 연결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검토를 별도로 진행 중이며,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 단계에서 교통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제시하겠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지하철 5호선 등 노선 결정은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사안임

구 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p>10.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수용 주민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정부 및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을 전면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지구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할 예정임

라. 주민의견 제출현황

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The screenshot displays the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Dokseom-si Hoan Gonghal - Jeonchak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interface. It includes a search bar at the top with '뚝섬시 호안 공할' and '전착환경영향평가' entered.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several tabs: '평가대상', '평가결과', '평가내용', '평가과정', and '평가결과'. The '평가대상' tab is selected, showing a list of assessment items. A red box highlights the first item in the list, which is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The table below the list shows the following data:

구분	평가대상	평가결과
1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2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3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4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5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6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7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8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9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10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11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12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13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14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15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16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17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18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19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20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21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22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23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24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25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26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27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28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29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30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31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32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33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34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35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36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37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38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39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40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41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42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43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44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45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46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47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48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49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50	뚝섬시 호안 공할 - 전착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p>(1) 장○</p>	
<p>(10) 박○○</p>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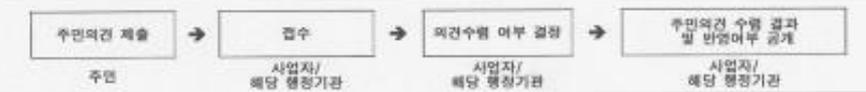
사업명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사업장 위치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성명	이 []	생년월일
	주소	김포시 양촌읍 석곡5번길 []	전화번호
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	첨부1-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내용이 많아 주민의견서를 첨부합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계획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작성)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김포한강2 공공주택공급 지구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진행만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지만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제출자 이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2)
 입○○
 (1/3)

(2)
 입○○
 (2/3)

첨부1

**김포한강2 공공주택공급 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조안)」에 대한 주민의견_제출서**

1. 교통

현재 사업지구 인근 주민들이 서울진출입으로 아주 많은 교통불편을 겪고 있어 사업시행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심각한 교통혼잡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영향예측과 교통개선 대책 마련 여부를 제대로 세워서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GTX-D라인과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김포는 극단의 교통지옥이 됩니다.

2. 이주대책

- 1) 이주민을 위한 이주민 재정착방안 마련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이주민이 신도시 기반공사를 하는 몇 년 동안 신도시 인근에 정착을 원할 경우 우선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2) 이주주택 대상 요건을 공람공고일 1년 전으로 강화한 것은 불합리합니다. 투기 행위 자체를 차단하여야 할 일을 이주민의 보상까지 축소되었으므로 그에 상응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모산 마을은 신규주택단지입니다. 마을 이주민 전원에게 생활대책용지를 요구합니다.

3. 환경

김포한강2 공공주택공급 예정지구는 김포국제공항 항공기의 항로와 중첩해서 위치하여 항공기소음 예측 조사 한 후에 전문가 의견 및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 절차

지구계획 수립 및 진행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사전협의체) 구성하여 공동 참여 요청합니다.

5. 개발계획

토지소유자 협의 없는 지구지정 반대합니다. 보상 시 기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을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충분한 보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6. 이주대책지

- 1) 지상 1층에 한해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용도 허용 가능한 부분을 지상2층과 60%로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 2) 타 지역에서도 이주대책지 내 주차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지 내 주차용량을 충분 감당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그린공원 지하 주차장) 반영을 요청합니다.
- 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지 배치를 반드시 지구 내 강제 이주되는 주민과 협의하여 이주대책지 배치 계획 수립 요구합니다(관민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모산마을주민회 주민대책위원회

(2)
임○○
(3/3)

첨부1

- 4)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이주자택지 매매가 제한되어 원주민의 재정확이 어려워졌습니다. 원주민 재정확충을 높이기 위한 이주자택지의 매매 허용 요구합니다.
- 5) 이주자택지 제공면적은 평균 100-120평 확보를 요청합니다.
- 6) 이주자택지 건축물은 5층까지 허용을 요구합니다(1-2층 상가와 사무실, 3-5층 주택 조성)
- 7) 이주자택지 주변으로 충분한 조경 및 공원시설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7. 보상

- 1) 김포가 서울로 편입 여부가 거론되고 있어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합니다. 현 상황과 주변환경, 물가 상승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거래가 이상 보상하는 현실적인 보상이 산정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 2) 김포지역은 서울 편입 여부 결정 전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현재토지보상 기준을 적용한다면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기준을 폐지하고 현실적 대안(기준) 마련을 요청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원주민과 공유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합니다.

8. 세금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이주에 대한 자의적인 뜻이 없는 이주민들에게 강제 수용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발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득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양도세를 적용한다면 일반 감면조항 적용은 부당합니다. 적용한다면 일반 감면조항에 추가 감면이 필요합니다. 강력히 요청합니다.

9. 주민대책위

- 1) 각 주민대책위의 민관협의체 참여를 요구합니다.
- 2) 지장물조사 시 주민대책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요구합니다.
- 3)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주민 임시 주거지역 형성 방안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 4) 이주대책단지 조성 중에 있어 대책위원회,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를 요구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제출자: 임

모산마을주민회 주민대책위원회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주)동해종합기술공사 | 본 | 포그다움 | 개인정보수정 | 사이트맵

환경영향평가소개
사업조치 및 정보입력
협의를개
국민참여

국민참여
Public participation

협의진행현황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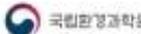
평가서 초안 공람

행정처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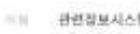
사용자지원

주민의견수렴 조회

평가항목	공통	의견제출자	건 <input type="text"/>
제목	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		
내용	<p>1. 교통 현재 사업지구 인근 주민들이 생활불편으로 아주 많은 교통편의를 하고 있어 사업시행 시 교통량 증가 우려입니다. 이에 대한 영향예측과 교통개선 대책 마련 여부를 제대로 세워서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후속 김포연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김포는 국민의 교통지옥이 됩니다.</p> <p>2. 이주대책 1) 이주민을 위한 대주민 재정적방법안 이견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이주민이 전도사 기반공사를 하는 몇 년을 생활 경우 우선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2) 이주대책 대상 요건을 공공공급 1년 전으로 강화함으로써 이주민 보상이 축소 되었습니다. 투기 행위 차단과 상대적으로 낮은 이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시행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이유였으며 합리하지 않습니다. 이에 살을하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3) 보상마련은 신속한원주책입지입니다. 마을 이주민 전체에 생활대책을지을 요구합니다.</p> <p>3. 환경 김포한강2 공공주택공급 예정지구는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및 원전과 출항에서 위치하여 항공기소음 예측 및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p> <p>4. 절차 지구계획 수립 및 집행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시정협의회) 구성하여 공동 참여 요청 5. 개발계획 토지소유자 협의 없는 지구지정 반대합니다. 보상 시 기존 주민들의 희생에 강요하는 사업을 반대합니다. 현실적인 충분한 보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p> <p>6. 이주대책 1) 지상 1층에 한해 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용도 허용 가능한 부분을 지상2층과 60%로 변경할 것 2) 타 지역에서도 대주자택지 내 주차장 문제로 골살을 입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지 내 주차용량을 충분 권 (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반영을 요청합니다. 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지 배치를 반드시 지구 내 강계 이주되는 주민과 협의하여 이주대책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4) 「보지보상법」 제정으로 이주대책지 해제가 제한되어 읍주민의 재정력이 어려워졌습니다. 원주민 재정 책지의 해에 허용 요구합니다. 5) 이주대책지 제공면적은 평균 100-120평 확보를 요청합니다. 6) 이주대책지 건축물면 5층까지 적용을 요구합니다(1-2층 상가와 사무실, 3-5층 주택 조성) 7) 이주대책지 주변으로 풍분한 조경 및 공원시설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p> <p>7. 보상 1) 김포가 서울로 편입 여부가 거론되고 있어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합니다. 전 상황과 추분히 고려하여 설계가 미상 보상하는 현실적인 보상이 상정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2) 김포지역은 서울 편입 여부 결정 전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현재도시보상 기준을 적용한다면 큰 번</p>		
첨부파일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미래일부단수집거부
이용약관

주소 : 충청남도 구례군정곡면

(3)
김○○
(1/2)

환경영향평가소개
사업조직 및 정보입력
협약동계
국민참여

국민참여
Public participation

협의진행현황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평가서 초안 공람

행정처분현황

사용자지원

주민의견수렴 조희

평가항목	공통	의견제출자	구
제목	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		<input type="text"/>
의견내용	<p>6. 이주대책</p> <p>1) 지상 1층에 한해 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용도로 허용 가능한 부분을 지상2층과 60%로 변경할 것을 2) 타 지역에서도 이주대책이 내 주자일 문제로 물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내 주자일상을 호분 중 (근린생활 용지 부지일) 반영을 요청합니다.</p> <p>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이 배치를 반드시 지구 내 갖게 이루어지는 주민과 협의하여 이주대책 (관입합리제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p> <p>4) 「토지보상법」 제정으로 이주대책이 배치가 재현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워집니다. 원주민 재정 착의 대책 허용 여부를 요구합니다.</p> <p>5) 이주대책이 재정착적인 평균 100-120명 확보를 요청합니다.</p> <p>6) 이주대책이 건축물은 5층까지 허용을 요구합니다(1-2층 상가의 사무실, 3-5층 주택 조성)</p> <p>7) 이주대책이 주변으로 중산층 및 공영시설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p> <p>7. 보상</p> <p>1) 김포가 서울로 편입 여부가 거론되고 있어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 합니다. 현 상황과 주 분히 고려하여 살거리가 예상 보상은 현실적인 보상이 선정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p> <p>2) 김포지역은 서울 편입 여부 결정 전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현재도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면 큰 번 다. 현재 토지보상 기준을 폐지하고 현실적 대안(기준) 마련을 요청하고 개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원주 의합니다.</p> <p>8. 세급</p> <p>이부의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이주에 대한 지역적인 동의 없는 이주민들에게 강제 수용되는 것 하는 보상 체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득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양도세를 적용한다면 일단 감면조항 적용 일한 감면조항에 추가 감면이 필요합니다. 강력히 요청합니다.</p> <p>9. 주민대책위</p> <p>1) 각 주민대책위의 민관협력체 참여를 요구합니다.</p> <p>2) 지정을 조사 시 주민대책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요구합니다.</p> <p>3) 민관협력체를 통해 원주민 임시 주거지에 행정 방안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p> <p>4) 이주대책단지 조성 중에 있어 대책위원회,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를 요구합니다.</p> <p>10. 단독주택마을에 주거용을 목적으로 건축용 개발행위제인으로 인해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공분부 근 관하여 해당 주민들도 이주대책에 포함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p> <p>11. 단독주택마을에 주거용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으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건축이 현실적으로 아 토지보상시 인근 대지가격의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바랍니다.</p> <p>12 이주대책에 대상 요건을 공영공고일 1년전으로 강화한 것은 불합리합니다. 토지 투기 행위 자체를 차 단시키지 축소시점으로 그에 상응한 보상을 요구 합니다.</p> <p>13. 원주민 협의와 의사기간을 확정 한 차에 한해서는 원 거주지에서 최대로 머물 수 있는 기간 보상을 요 14. 신속한원주책던지던 늘들미들의 존자 또는 배척을 요구합니다.</p>		
접부파일			



국립환경과학원 KEI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영향 검토정보

유권기관

관린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용약관

주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운영: 한국환경연구원 330-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8동(과속 연구사동) 8층-11호

문의처: 1600-1156 / 팩스: 02-6455-1158 / E-Mail: main@kei.re.kr



유사의견 제출자 : (4)이○○, (5)양○○, (6)임○○, (7)김○○, (8)이○○, (9)최○○, (11)공○○

나) 공람장소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암동, 잠기동, 양촌읍 일원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제출자	성명	김 []	생년월일	66. []
	주소	서울시 관악구 서현동 []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가파른, 선진, 불선진성에 대한 식성, 등식물상에 대한 번번한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상세하게 조사 및 계획에 적수 반영됨 ○ 주변 광역 교통망 계획이 충분히 용이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함 (관학-계천 고속도로, 원곡역, 외곡역, 가로양, 대곡역 등) ○ 자족시설이 되도록 계획 반영 (베드룸이 아닌 자족시설) ○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관련 도로계획이 확충되어야 하며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 - 개회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대해 합니다): 필요[O], 불필요[] - 이유(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제출자 김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

                graph LR
                A[주민의견 제출  
주민] --> B[접수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B --> C[의견수렴 여부 결정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C --> D[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

210mm×297mm(복합지 80g/㎡)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 함께 합시다 수용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

- 수신자 : 1. 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 기획과)
2.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경기북부 지역본부)
3. 김포시청 (스마트 도시과장)

제 목 :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
및 주민요구사항 제출

1. 귀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발표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 및 토지 등 재산권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큰 불안감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을 수용당하는 이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의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훈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3.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는 다음과 같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는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사항

가.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대책과 관련하여

(1) 자연환경 중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과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중요성을 인지하여 김포 한강2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도면밀히 연구 조사하여야 하는데, 식물상의 경우 조사시기는 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10월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조류의 경우 이동성이 큰 종이므로 계절적 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양서류·파충류의 경우 조사시기는 봄 2-5월, 여름 6-8월, 가을 9-10월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자연환경 중 수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의 경우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생활용수 및 오수의 공급 처리량, 여유용량 등을 조사하고 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용 여부와 수질오염총량 관리시행지역의 할당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하수연계처리 방안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생활환경 중 대기질과 관련하여, 사계절에 따라 대기질 차이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 대표성이 큰 값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소 위치 또한 계획지구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계절별로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는바, 비산먼지 저감대책, 교통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4) 생활환경 중 소음·진동과 관련하여,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신도시 등이 존재하여 교통문제가 이미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및 새로 조성되는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진동 문제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5) 사회경제적 환경(일조장해)과 관련하여, 일조장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문헌조사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또한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바, 일조영향 최소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6) 기타환경(교통환경)과 관련하여, 이진 계획지구가 속한 김포시에는 이진 계획지구 이외에 바로 옆에 김포 한강신도시, 김포 장기지구, 김포 양곡지구 등 최근 김포시에 여러개의 신도시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최근 김포시에 조성된 신도시에서 서울로의 출퇴근길이 이미 교통대란으로 악명이 높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교통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7)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제12조(저감방안의 수립)에 따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나. 소결론

위와 같이 이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 대체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신뢰성 없는 표본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일반적·추

상적으로 결과 및 방안 등이 기술되어 실질적 조사 및 평가라기보다 형식적 짜맞추기에 급급한 결과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경우 이러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신뢰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5. 주민요구사항

가. 완전하고 정당한 토지보상을 위해 총사업비 및 용지비에 대한 재심의 를 요구합니다.

사업시행(예정)자가 현재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추정사업비를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대책위는 추정사업비, 용지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금액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중 용지비는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계세공과금,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대여비용 등 제반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성원가가 공개된 사업지구를 용지비가 통상 총사업비의 50%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의 용지비도 총 사업비의 5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보상금은 현재 토지 거래시세의 1/3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당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추정 사업비 및 용지비를 재심의하여 50%이상 대폭 상향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나. 토지보상을 우선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토지와 지장물을 분리하여 토지평가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토지 보상 평가시 토지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평가시스템을 만든 후 주민들과 합의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사업비 및 용지비를 협의보상평가 시점에 증액하여 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위 2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이후 지장물 조사에 동의할 것입니다.

다. 사업시행자는 공장이주대책 수립의무가 있는바, 실질적인 기업이전대책을 요구합니다(선이주 후 철거 주장).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에 제조업, 공장 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지구 내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에 제조업,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소유자들을 대변하여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영업을 지속해 온 제조업,

공장, 도매 및 소매업, 물류 및 유통, 창고 및 근생건물 소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이전대책을 요구합니다.

라. 주택이 철거되는 원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요구합니다(선이주 후 철거 주장).

사업시행(예정)자에게 원칙적으로 이주대책을 마련 후 철거공사 등을 시행하고, 선이주 단지 조성을 위해 부득이 우선 철거되는 주민에 대해서는 인접지역 공공임대주택(국민, 행복, 데입 등) 건설량의 30% 범위 안에서 사업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주주택지 공급면적의 경우 265㎡ 이상 330㎡ 이하에서 원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공급하고, 이주주택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2층까지 허용하여 줄 것과 용적률을 200%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주주택지 점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주차장을 지상 또는 공원부지 지하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

마. 사업시행자는 ‘주민생계지원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바, 원주민들의 제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한 주민생계조함 승인 및 철거공사 등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의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생계지원대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생

계조함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김포시에게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1차적으로 공사진행 단계에서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및 건설폐기물처리 포함), 무연분묘 이장, 산림수목의 벌치(잔가지 및 뿌리 파쇄) 및 가이식(조경),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의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바. 공익사업 양도세 감면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을 요구합니다.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 등에 따르면 원주민들이 토지강제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험값 보상금의 최고 40%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수용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 등이 김상훈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양도세 감면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 감면안을 대폭 확대하는 법률개정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현금보상 50%, 채권보상 55%, 3년만기 채권 65%, 5년만기 채권 75% 감면 등).

사.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민관공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회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상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의 ‘보상협의회’가 보상계획공고 시점에 구성되므로 개발사업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개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과 반대 등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인정고시 전에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인 김포시, 주민대표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민관공협의체)를 구성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 확충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김포골드라인이 2019년 개통되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다소 용이해졌으나 경전철(2량) 수송력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출근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는 5호선을 연장하고 GTX(장기역), 김포골드라인과 연결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자. '지구계획 수립 단계' 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수용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정부 및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전면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있는 지구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6. 다시 한번, 귀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담당 : 사무국장 이강진 상임부위원장 : 이강철 위원장 : 이훈재

시행 : 김포한강2 김포신도시주민대책위 2023-9 (2023. 11. 03.)

우 : 10095)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341-14 2층 / <https://naver.me/GuCh7hLe>

전화번호 031-987-0099 / 팩스번호 031-987-1098 / Email kcl6207@hanmail.net